

참원지방법원 거참지원

공 시 최 고

사 건 2006카공 21 공시최고

신 청 인 이 은택

경남 함양군 함양읍

난평리 185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. 7. 24. 14:00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 2006년 4월 18일

관 사 노 태 헌

증서의 표시

- 종 류: 자기앞수표
- 번 호: 거바94296911
거바94296916-30
거바94296914-15
- 수표금액: 각 100,000원
- 발행일자: 각 2006. 4. 7.
- 발행인 겸 지급장소
각 함양농업협동조합 용평지점소
- 최종소지인: 각 이은택